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행정기본법」 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재처분의 상한 명시 등 〉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44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2
2. 주요 내용	3
가. 제재처분의 상한 명시	3
나.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	5
3. 법안별 검토	8
가. 제재처분의 상한 명시	8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2) 「식품산업진흥법」	14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4) 「축산법」	23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33
나.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	46
(1) 「농지법」	4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9. 20.
3. 회 부 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법 제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2021.03.) 되었으나,

일부 법률의 경우 아직까지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각 개별법을 「행정기본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입법임.

2. 주요 내용

가. 제재처분의 상한 명시

「행정기본법」 제22조는 제재처분¹⁾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²⁾,

「간척지법」 등 5개 법률은 공사의 중지명령, 인증표시의 사용정지 명령³⁾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간척지법」 등 5개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6개월~1년)을 명시하여 이들 법률이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2)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중지’와 ‘정지’의 차이 : ‘중지’는 완전히 멈추는 것, ‘정지’는 일시 멈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법제처 내에서도 그 해석에 이견이 있다고 함[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실무 의견(24.10.24., 유선문의)] ⇒ 통상, 건설·공사 등에 ‘중지’, 인증·영업 등에 ‘정지’로 법률상 규정

[제재처분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간척지법」	사업시행자가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간척지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u>6개월 이내</u> 에서 간척지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식품산업진흥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우수식품등인증 표시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음	<u>1년 이내</u> 에서 우수식품등인증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전통주산업법」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었을 경우 품질인증 표시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음	<u>1년 이내</u> 에서 품질인증 표시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 유통업자가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의 사용정지, 인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음	<u>1년 이내</u> 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의 사용정지, 인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친환경농어업법」	인증사업자 등이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친환경 인증표시의 정지, 인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음	<u>1년 이내</u> 에서 친환경 인증표시의 정지, 인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제재처분 정비대상 법률 관련 처분실적]

근거법률 (관련조항)	주요 사유	행정처분 실적(건)				벌칙
			'21	'22	'23	
간척지법 (제34조 행정처분)	사업 불가능, 계획 승인받지 않고 사업 시행 등	중지 또는 변경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2조1항)
식품산업진흥법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표시방법 위반(1차)	변경	-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제2항)
	인증기준 위반, 표시방 법 위반(2~3차)	표시정지	31	26	24	
	생산·영업 곤란한 경우	판매정지	1	-	-	
전통주산업법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표시방법 위반	표시변경	2	-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8조1항)
	품질 인증기준 위반, 생산 및 산업 영위 곤 란한 경우	사용정지	1	1	4	
축산법 (제42조의7 인증의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	인증취소	94	78	6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인증품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제거사용정지	17	85	81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증기준 위반	시정조치	16	34	45	
	농약성분 기준초과	판매금자정지	-	-	2	
		회수·폐기	-	-	2	
	표시방법 위반	세부 표시사항 변경	2	-	1	
친환경 농어업법 (제24조 인증의 취소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	인증취소	2,076	2,307	1,35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60조3항)
	인증품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제거사용정지	1,560	1,683	1,319	
	비의도적 요인으로 인증기준 위반	시정조치	515	515	307	
	농약성분 기준초과	판매금자정지	1	19	45	
		회수·폐기	16	20	31	
	표시방법 위반	표시사항 변경	12	8	7	

나.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

「행정기본법」 제31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⁴⁾,

「농지법」 제63조제2항·제3항·제5항도 「행정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농지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행정기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법」과 「행정기본법」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4)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 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

구 분	주 요 내 용
「농지법」	·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 실적]

근거법률 (관련조항)	주요 사유	행정처분 실적(건)				벌칙
			'21	'22	'23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등	이행강제금 부과	603	485	집계 중 ('24.12월 확정 예정)	지방행정제재부과 금법에 의해 징수 (법 제63조제8항)

[제재처분 및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기본법」 조문]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 법안별 검토

가. 제재처분의 상한 명시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가 이 법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사중지 명령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 · 제35조 ·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u>중지·변경</u> ,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행정처분) ① ----- ----- ----- ----- <u>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u>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1. ~ 4.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u>중지·변경</u>,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u>중지·변경</u>,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② ----- -----<u>변경·중지</u>-----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청문) ----- ----- -----. 1. 2. (현행과 같음) 3. -----<u>변경·중지</u>----- ----- ----- 제38조(벌칙) ----- ----- -----. 1. ~ 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전에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u>중지·변경</u>,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u>변경</u> · <u>중지</u>----- -----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규칙에 제재처분 상한이 규정되어 있고, 법률로는 그 상한을 정하지 않아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과 일치시키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또한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이 6개월 이내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중지의 상한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③ 검토의견

「행정기본법」 제22조는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

현행법은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등에 간척지활용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중지 기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사중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여 「행정 기본법」 제22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21~'23년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재처분 정비대상 법률 관련 처분 실적]

근거법률 (관련조항)	주요 사유	행정처분 실적(건)				벌칙
			'21	'22	'23	
간척지법 (제34조 행정처분)	사업 불가능, 계획 승인받지 않고 사업 시 행 등	중지 또는 변경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2조1항)

※ 자료 :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 제출(2024.10.25.)

[별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처분기준의 "1차"는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는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하며, "3차"는 2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나.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공사 중지 또는 변경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이나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명령	공사 중지 또는 변경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2) 「식품산업진흥법」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우수식품등인증⁶⁾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인증 표시 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표시의 사용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의 상한을 1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u> 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 ----- ----- ----- ----- ----- ----- <u>표시의 변경,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그 식품의 판매정지</u> -----.

6)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

②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은 시행규칙에 제재처분 상한을 규정하고 법률에 상한을 정하지 않아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과 일치시키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③ 검토의견

「행정기본법」 제22조는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①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 ②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③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

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⁷⁾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세가지 인증제도를 ‘우수식품등인증’이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증기준 또는 표시 방법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정지기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동 법 시행규칙에서 최대 9개월까지 표시의 사용정지 또는 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사용정지 및 판매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사용정지 및 판매정지 기간의 상한을 현행 시행규칙(9개월)과 달리 1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현재 정지명령의 상한을 9개월로 운영 중이지만, 동 개정안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제재처분 기준의 형평성 측면에서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21~’23년간 「식품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제재처분 실적은

7)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표시 변경 명령 3건, 표시사용 정지 81건, 식품 판매 정지 1건이었음.

[제재처분 정비대상 법률 관련 처분 실적]

근거법률 (관련조항)	주요 사유	행정처분 실적(건)				벌칙
			'21	'22	'23	
식품산업진흥법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표시방법 위반(1차)	변경	-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제2항)
	인증기준 위반 표시방 법 위반(2~3차)	표시정지	31	26	24	
	생산영업 곤란한 경우	판매정지	1	-	-	

※ 자료 :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 제출(2024.10.2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 유효기간(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정기심사에 따
라 다시 부여받은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2)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사용 정지 또는 판매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은 때	법 제28조제1 항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 증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표시사용정 지 1개월	표시사용 정지	표시사용 정지

전통식품품질인증기준 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 기준에 위반된 경우			3개월	6개월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표시방법 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표시변경명령	표시사용정지 3개월	표시사용정지 6개월	
다. 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의 생산이나 그 영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정지 1개월	판매정지 3개월	판매정지 6개월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인증기준 또는 인증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표시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용정지 명령의 상한을 1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u>변경·사용정지</u> 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 ----- ----- ----- ----- ----- <u>변경 또는 1년 이내의 사용정지</u>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시행규칙에 제재처분 상한을 규정하고, 법률에 상한을 정하지 않아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과 일치시키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③ 검토의견

「행정기본법」 제22조는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품질인증 표시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법률상 정지기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최대 8개월(가중 시 1년)까지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용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21~'23년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제재처분 실적은 표시 변경 명령 2건, 표시 사용 정지 6건이었음.

[제재처분 정비대상 법률 관련 처분 실적]

근거법률 (관련조항)	주요 사유	행정처분 실적(건)				벌칙
			'21	'22	'23	
전통주산업법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표시방법 위반	표시변경	2	-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8조1항)
	품질 인증기준 위반 생산 및 산업 영위 곤란 한 경우	사용정지	1	1	4	

※ 자료 :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 제출(2024.10.25.)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표시 사용정지 1개월	표시 사용정지 3개월	표시 사용정지 6개월
나.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표시 변경	표시 사용정지 1개월	표시 사용정지 3개월
다.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8조 제1항	표시 사용정지 2개월	표시 사용정지 4개월	표시 사용정지 8개월

4) 「축산법」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무항생제축산물⁸⁾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이 법의 의무사항 또는 인증기준, 인증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인증 표시의 사용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인증표시의 사용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정지 명령의 상한을 1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10제8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u>제거·사용정지</u>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 ----- ----- ----- <u>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u>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 4. (현행과 같음)
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②·③ (현행과 같음)

8) 무항생제축산물이란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나 항균제와 같은 화학적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축산물을 의미함.

현행	개정안
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u>제거·사용정지</u> 또는 <u>시정조치</u> 2. <u>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u>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의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제8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을 압류하게	⑧ ----- ----- ----- ----- ----- ----- -----. 1. ----- ----- <u>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u> -- 2. <u>인증품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폐기</u> 3.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7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10항에 따른 압류 및 제11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은 시행규칙에 제재처분 상한을 규정하고, 법률에 상한을 정하지 않아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과 일치시키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③ 검토의견

「행정기본법」 제22조는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인증표시의 사용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표시 정지기간, 인증품의 판매 정지기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용정지 및 판매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21~'23년간 「축산법」 제42조의7에 따른 제재처분 실적 중 인증표시의 제거와 사용정지는 183건이고, 인증품의 판매금지·정지는 2건임.

[제재처분 정비대상 법률 관련 처분 실적]

근거법률 (관련조항)	주요 사유	행정처분 실적(건)				벌칙
			'21	'22	'23	
축산법 (제42조의7 인증의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인증취소	94	78	6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인증품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제거사용정지	17	85	81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증기준 위반	시정조치	16	34	45	
	농약성분 기준초과	판매금지정지	-	-	2	
		회수·폐기	-	-	2	
	표시방법 위반	세부 표시사항 변경	2	-	1	

※ 자료 :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제출(2024.10.25.)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10]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 마.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 회수·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은 다음 1) 및 2)의 인증품을 처분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증품에 다른 인증품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
 -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위반사항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취급한 자 또는 취급시기가 동일한 인증품을 말한다)
- 바.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사용정지와 인증품의 판매정지 처분은 해당 인증품의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사.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사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사용한 경우 (8) 별표 6 제2호바목6)을 위반하여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명세가 기재된 진단서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 (9) 별표 6 제2호바목7)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10)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11)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12) 무항생제축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다) 취급자 (1) 별표 6 제3호라목1)을 위반하여 소분·저장·포장·운송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이 혼입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3) 별표 6 제3호마목1)·2)를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인증취소 인증취소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	--	--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가)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3) 인증사업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2조의7 제1항제2호, 법 제42조의10 제8항	시정조치 명령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의7 제1항제3호	인증취소	
5)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2조의7 제1항제4호	인증취소	
6) 인증사업자가 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의10 제8항	시정조치 명령	

나. 인증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인증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등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의10 제8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
2) 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의10 제8항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3)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법 제42조의10 제8항	해당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4)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 제42조의10 제8항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3. 행정처분 절차

- 가. 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행위를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다. 제2호나목3)에 따라 해당 인증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라. 다목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유기식품⁹⁾등의 인증¹⁰⁾을 받은 사업자가 이 법의 의무사항 또는 인증기준, 인증 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인증표시의 사용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의 상한을 1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1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 -----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물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10)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현행	개정안
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u>인증표시의 제거·정지</u>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	----- ----- ----- <u>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u> -----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 또는 판매·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	⑦ ----- ----- -----

현행	개정안
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u>제거·정지</u>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3. (생략) ⑧ ~ ⑩ (생략)	----- ----- ----- -----. 1. ----- ----- <u>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u> -----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폐기 3.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행규칙에 제재처분 상한을 규정하고, 법률에 상한을 정하지 않아 「행정기본법」 상 입법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본법」 상 입법기준과 일치시키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③ 검토의견

「행정기본법」 제22조는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등에는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인증품의 판매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정지기간의 상한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용정지 및 판매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21~'23년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제재처분 실적 중 인증표시의 제거와 사용정지는 4,562건에 이르고, 인증품의 판매금지·정지는 65건임.

[제재처분 정비대상 법률 관련 처분 실적]

근거법률 (관련조항)	주요 사유	행정처분 실적(건)				벌칙
			'21	'22	'23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인증의 취소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인증취소	2,076	2,307	1,35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0조3항)
	인증품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제거사용정지	1,560	1,683	1,319	
	비의도적 요인으로 인증기준 위반	시정조치	515	515	307	
	농약성분 기준초과	판매금지정지	1	19	45	
		회수·폐기	16	20	31	
	표시방법 위반	표시사항 변경	12	8	7	

※ 자료 : 농업혁신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 제출(2024.10.2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제46조,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 마.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인증품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의 판매금지·판매정지, 회수·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은 다음 1) 및 2)의 인증품등을 처분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위반사항이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제조·가공 또는 취급한 자, 품목, 제조·가공 또는 취급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을 말한다)

바.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정지와 인증품등의 판매정지의 처분은 해당 인증품의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사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1)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또는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2) 1)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3)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통기준 (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이하 이 표에서 "경영 관련 자료"라 한다)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2)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1) 별표 4 제2호다목1) 및 라목2)를 위반하여 화학비료,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2)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시정조치 명령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3) (2)외에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다) 유기축산물(유기양봉의 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 (1) 별표 4 제3호나목2)를 위반하여 축사의 밀도조건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4 제3호마목을 위반하여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별표 4 제3호바목1)을 위반하여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공급한 경우 (4) 별표 4 제3호바목3)·4)를 위반하여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5) 별표 4 제3호바목6)을 위반하여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6) 별표 4 제3호사목1)을 위반하여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치료목적 외에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7) 별표 4 제3호사목3)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별표 4 제3호마목의 전환기간(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말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8) 별표 4 제3호사목6)을 위반하여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명세가 기재된 진단서를 갖춰 두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9) 유기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	--	--	--	-------------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10) 유기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11) 유기축산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조치 명령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12) (11)외에 유기축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라) 유기축산물 중 유기양봉의 산물·부산물				
(1) 별표 4 제4호다목을 위반하여 유기양봉의 인증기준을 1년 이상 준수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인증취소		
(2) 별표 4 제4호마목2)를 위반하여 유기양봉의 산물등에 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3) 별표 4 제4호마목3)·4)에 따른 꿀벌의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 조치 및 물질의 사용으로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4) 별표 4 제4호마목6)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치지 않고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인증취소		
(5) 유기양봉의 산물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6) 유기양봉의 산물등에서 동물용		인증취소		

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7) 유기양봉의 산물등에서 꿀벌의 먹이습성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8) (7)외에 유기양봉의 산물등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마)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1) 별표 4 제5호나목1)·3)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재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 (2) 별표 4 제5호라목을 위반하여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한 경우 (3) 별표 4 제5호자목1)을 위반하여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가)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성분이 0.01mg/kg 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또는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바) 무농약농산물 (1)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라목 3)을 위반하여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무농약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시정조치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시정조치 시정조치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	--	--	---	---

흘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 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3) (2)외에 무농약농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사) 무농약원료가공식품 (1) 별표 14 제3호나목1)·3)를 위반하여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 (2) 별표 14 제3호다목1)을 위반하여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한 경우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가) 식품첨가물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0.01mg/kg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또는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아) 취급자 (1) 별표 4 제6호라목1)을 위반하여 소분·저장·포장·운송·수입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인증품이 아닌 제품이 혼입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2) 취급과정에서 합성농약,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3)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명령	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가) 원료 또는 재료 인증품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4)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4항)	시정조치 명령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7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6)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나. 인증품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동물용의약품 성분 등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등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3) 인증품등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5)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3. 행정처분 절차

-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다. 제2호나목3)에 따라 해당 인증품등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라. 다목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

1) 「농지법」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지의 처분명령¹¹⁾ 또는 원상회복 명령¹²⁾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및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 내용 중 이행강제금 부과 의 제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가 “시정명령”을

11)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2)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제63조가 개정(2024. 1.)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인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u>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u> <u>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u> <u>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u>	제63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

현행	개정안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 -----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u>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u> <삭 제>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 ----- ----- -----.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④ ----- -----제3항----- ----- ----- ----- ----- -----.

현 행	개 정 안
⑧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⑤ 제3항-----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중복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법 간 법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③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
한 경우 등에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³⁾.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
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
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⁴⁾.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농지법」 제63조제2항·제3항·제5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
하여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13)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
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
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4)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는 「행정기본법」 제31조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음.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기본법」과 「농지법」 규정 비교]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기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법」과 「행정기본법」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21~'22년간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1,088건임.

[제재처분 정비대상 법률 관련 처분 실적]

근거법률 (관련조항)	주요 사유	행정처분 실적(건)				벌칙
			'21	'22	'23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및 원상회 복 명령 미이행 등	이행강제금 부과	603	485	집계 중 ('24.12월 확정 예정)	지방행정제재부과 금법에 의해 징수 (법 제63조제8항)

※ 자료 : 농업혁신정책관실 농지과 제출(2024.10.25.)

문 의 처

02)6788-5414